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 및 공제책임 범위확대 등>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74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엔지니어링활동 정의 명확화	3
2. 손해배상범위 확대	9
3.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12
4. 사업현장 조사권 부여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입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엔지니어링활동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개정안 제2조는 현행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과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정비”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u>시험운전</u> , 평가, 검사, <u>안전성 검토</u> ,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u>유지 또는 보수</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 <u>운전</u> ----- <u>안전성 검토</u> , <u>안전점검</u> , <u>안전진단</u> ----- <u>유지</u> · <u>보수</u> (정비를 포함한다)

특정 용역활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은 동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¹⁾ 입찰자를 선정하고²⁾,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대가를 지급받게 됨³⁾.

현행법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및 “유지 또는 보수”를 열거하고 있음에 따라⁴⁾,

시험운전이 아닌 “운전”과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정비” 활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적용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라 명시되는 엔지니어링활동

현행법	개정안
시험운전	운전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안전점검, 안전진단
유지 또는 보수	유지·보수(정비를 포함한다)

개정안과 관련된 유사입법례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⁵⁾ 법령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⁶⁾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로 “시설물의 운영”,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명시하고 있고⁷⁾,

- 5)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 6)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 7)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전력사업 분야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⁸⁾ 법령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⁹⁾ 전력기술설계·감리업의 범위로 “운용”과 “안전·진단”을 명시하는 등¹⁰⁾ 운영 또는 운용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성 검토”는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안전성 검토”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시설물 등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한 수단 중에 “정비”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 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8)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영·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한편 특정 용역활동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함¹¹⁾.

이 때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수행기간이 짧은 활동유형(구매·조달·분석·계약검사·시험운전·안전성검토 등)에는 낮은 공제요율이 부과되며,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수행기간이 긴 활동유형(감리·관리·유지·보수 등)에는 높은 공제요율이 부과되게 됨.

<표 1> 엔지니어링사업 공제요율

(단위: %)

	설계	구매·조달	분석·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검토	감리	관리 유지·보수
설비	0.952	0.381	0.476	0.969	0.952
차량	1.031	0.412	0.516	1.049	1.031
조선	1.328	0.531	0.664	1.355	1.328
항공	1.615	0.646	0.807	1.646	1.61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기준 기본요율(엔지니어링공제조합)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 “사전운전”은 본 운영에 앞서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수행기간이 짧은 행위 유형으로서 공제요율 산정시 안전성검토에 준하여 낮은 공제요율(설비사업 기준 0.476%)이 부과됨.

반면 개정안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 “운전”은 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책임의 대상범위가 운영 관련 모든 활동과 결과에 미치고 책임기간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수명 전체에 해당하여,

“사전운전”은 물론 운영 중 사후관리 일부를 부담하는 “유지”·“보수”에 비해서도 공제책임 발생위험이 큰 활동유형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운전”을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위험의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공제가입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에 따르는 보험 및 공제위험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공제요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손해배상범위 확대 (안 제31조)

개정안 제31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를 “재산상의 손해”에서 “손해”로 확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u>재산상의 손해</u> 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손해</u> 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고의·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배상하고 인적 손해는 「민법」에 따라 배상하게 됨.

고의·과실이 증명되는 경우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르는 경우와 「민법」에 따르는 경우가 같다고 할 것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강제되고, 이에 따른 비용

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되게 됨¹²⁾.

이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는 인적 손해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적용되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개인은 물론 보험 또는 공제에 의해 이중적으로 보호를 받게 됨.

피해자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보다 인적 손해의 경우에 배상책임을 폭넓게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¹³⁾이 보험·공제 가입을 통해 분담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사업의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¹⁴⁾, 「전력기술관리법」¹⁵⁾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사업자가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요비용을 사업대가에 계상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손해”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안 제35조의2)

개정안 제35조의2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각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 및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에 따른 보증·공제 및 용자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제책임을 부담함16).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용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책임준비금은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과 계약만료 시의 환급금, 각 결산기마다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준비금이고,

비상위험준비금은 이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재해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소요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책임준비금과 구분하여 따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의미함.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조합의 재정안정성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로,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5조는 공제조합이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여¹⁷⁾, 책임준비금 등 계상에 관하여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공제 및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현재 실무상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운영 중으로¹⁸⁾, 공제조합의 준금융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할 때 보험금·환급금·배당금 등 일반지출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지출에 대비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서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또한 「산업발전법」¹⁹⁾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²⁰⁾, 「건설산업기본법」²¹⁾ 등 유사 입법례에서 각 산업별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24 결산 기준 준비금 적립금액은 489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Risk Based Capital, RBC)은 803%

19) 산업발전법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4. 사업현장 조사권 부여 (안 제35조의3)

개정안 제35조의3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조합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5조의3(사업현장에 대한 지도 등)</u>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현장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엔지니어링기술 및 연관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 수행 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보증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공제조합은 사업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사업자와 보증계약 또는 공제계약 체결시 교부하는 “업무거래기본약관”²²⁾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약관”²³⁾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사업현장 출입권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보험·공제 사기를 예방하고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사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전기공사공제조합법」²⁴⁾과 「건설산업기본법」²⁵⁾ 등 유사 입법례에서 공제조합이 보증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게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2) 업무거래기본약관 제12조(신고·통지·협조의무) ③ 약정인은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2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약관 제21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8조(시공지도 등)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5)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의 경우에도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사정할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 계약의 경우에도 사업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현장이라면 배상책임 발생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배상책임 발생 시 배상액을 공정하게 사정하게 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이 “보증책임 또는 공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입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사업현장 출입권 관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5조의3(사업현장에 대한 지도 등) ① 공제조합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제35조의3(사고현장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u>보증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증책임 또는 공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고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u>

문 의 처
02)6788-5460